

1. 예금담보 임의해지

2. 제제대상사실

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39조 제3항 및 「여신업무방법서」 제1편 제4장 제5절 제2조 등에 의하면 조합에 예치된 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질권설정 표시를 하고 점유하여야 하며, 담보로 제공된 예탁금 등은 관련 대출금의 회수에 충당하여야 함에도

2003.6.2.~2003.11.25.기간중 ●●●에게 35백만원을 대출 취급하면서 본인 및 ◆◆◆ 명의의 담보예탁금 5건, 48백만원을 담보로 취득하였으나 2003.7.21.~2004.7.19. 기간중 대출금이 전혀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동 예탁금을 전부 임의해지하여 줌으로써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전액의 부실발생을 초래하였음

3. 제제조치내용

제제대상	제제내용
임원	문책경고 : 1명
직원	견책 : 1명

< 관련법규 >

1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39조 제3항
2.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4조
3. 「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」 제2조 제1항
4. 「여신업무방법서」 제1편 제4장 제1절 제17조
5. 「여신업무방법서」 제1편 제4장 제5절 제2조